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간접고용(용역)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행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간접고용(용역)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행 계획을
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7. 24.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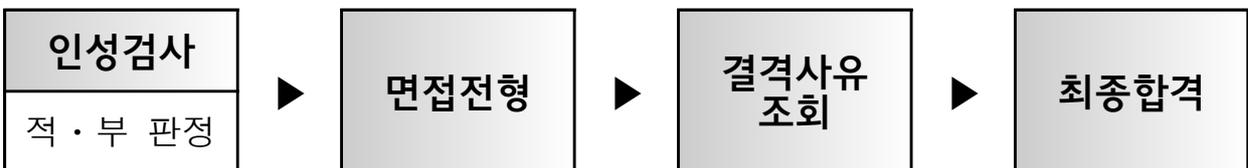
1. 정규직 전환 분야 · 인원

전환분야	인원	주요업무
특수직(미화직)	7명	◦ 공사 내·외부 환경 정비 및 청결 유지 등

2. 자격요건

- '17년말 기준 공사 미화용역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 중 만 60세 미만자
- 공사 인사규정 제14조(결격사유)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3. 전형절차 <※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 입사지원 및 면접 진행>



4. 최종합격자 선정

- 면접 전형 결과 만점의 70%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
- 평가사항
 - 공사인으로서의 사고와 자세, 청렴도 및 신뢰도, 책임감 및 적극성, 협업성 및 희생정신, 용모·예의·품행 등

5.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

- 공고/접수기간: 2018. 7. 24. ~ 8. 3. 18시까지
- 접수방법: 온라인(www.jpdc.co.kr) 접수
 - 온라인 접수만 인정 (우편, 이메일, 직접방문 등 불가)
 - ※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별도 제출서류 없음
 - ※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될 수 있음

6. 기타 유의사항

-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음.
- 공사 사정에 따라 임용 시 또는 발령 시 근무부서 및 근무지 변경 가능
-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, 입사 후 제주 지역 거주가 가능하여야 함
- 임용 예정일 이후 정상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 출근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-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식품위생법 제40조, 먹는물 관리법 제29조 등에 의거 건강검진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※ 근무 불가능한 질병

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(한센병 등 세균성 피부질환), 파라티푸스,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, 소화기계통 전염병, A형 간염, 살모넬라, 쉬겔라, E형 간염
--
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응시분야에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

-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최종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취소되며 향후 5년간 공사의 모든 채용시험에 응할 수 없음
-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기한 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, 정규직 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, 향후 별도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음
- 각 전형별 부적격자 또는 정규직 전환 이후 ' 19년말 이전 만 60세로 변경되는 자는 정년퇴직 기준일로부터 ' 19.12.31.까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고용 보장
- 제출서류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요청 시 반환 하되, 온라인으로 등록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180일 이후 불합격자의 제출서류는 폐기함. (제출서류 반환 요청 시 별첨 서식 작성 후 제출)
- 기타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“채용문의”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인사교육팀(☎ 064-780-3514)으로 문의

※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.

7. 전형 일정

구분	일정	비고
공고	7.24. ~ 8.3.	공고 10일 이상
접수기간	7.24. ~ 8.3.	온라인(www.jpdc.co.kr) 접수
인성검사	8. 6.(예정)	온라인 검사
면접전형	8. 6.(예정)	
합격 예비자 발표	8.13.(예정)	
임용 등록	8.13. ~ 8.17.	
결격사유 조회	8.20. ~ 8.31.	신원·허위사실·비위면직자 조회, 신체검사
임용	9. 1.(예정)	

※ 공사 인사규정 제14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의2.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, 해임,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
9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